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17 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:정태호·강훈식·김영배

김진표・박상혁・송재효

이광재 • 이규민 • 이소영

정일영・황운하・황 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(납품기업)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,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하는 결제제도임. 이로써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, 금융비용도 절감이 가능함. 또한 중소기업은 현금유동성이 높아져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 기여함.

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 장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의 거래 및 납품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자 함(안 제22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에 입금된 납품대금은 압류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}	개 정 안
제22조(납품대금의 지]급 등) ①	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
~ ⑤ (생 략)		~ 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⑥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
		전용예치계좌에 입금된 납품대
		금은 압류할 수 없다.